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2-09

# 울 산 지 방 법 원

## 제 1 행 정 부

## 판 결

사 건 2019구합675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

원 고 [redacted]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[redacted]

담당변호사[redacted]

피 고 [redacted]시장

소송대리인 변호사[redacted]

변 론 종 결 2020. 5. 21.

판 결 선 고 2020. 7. 16.

## 주 문

1. 피고가 2017. 7. 6.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지방세 5,899,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2-09

# 이 유

## 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도로의 설치·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[redacted]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, [redacted]시 [redacted]면 [redacted]리 1054-4, 같은 리 1086, 같은 리 1088, 같은 리 1389-5 각 지상 별지 1 목록 기재 건축물(이하 '이 사건 건축물'이라 한다)의 소유자이다.

나. 피고는 2017. 7. 6.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4,035,750원, 지역자원시설세 1,346,670원, 지방교육세 517,400원 합계 5,899,820원의 지방세 부과처분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다.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. 9. 28.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. 12. 22. 기각결정을 받았고, 2018. 3. 19.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조세심판원은 2019. 4. 26.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'도로의 부속물'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(2019. 12. 31.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'도로법에 따른 도로'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, '도로의 부속물'에는 해당시설과 그 부지 및 해당시설의 유지·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과 그 부지도 포함되는바, 이 사건 건축물은 모두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한다.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2-09

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대상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2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1) 관련 법리

가)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,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은 '도로법에 따른 도로'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, 도로법 제2조 제1호는 '도로'란 '차도, 보도, 자전거도로, 측도, 터널, 교량,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,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'고 규정하고 있으며, 도로법 제2조 제2호는 '도로의 부속물'이란 '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,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'라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는 '주차장, 버스정류시설,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'(가목), '통행료 징수시설, 도로관제시설,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'(다목) 등 외에 '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'(바목)을 들고 있고, 도로법 시행령 제3조는 '법 제2조 제2호 바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'라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는 '주유소, 충전소, 교통·관광안내소, 졸음쉼터 및 대기소(제1호), '방호울타리, 충격흡수시설, 가로등, 교통섬, 도로반사경, 미끄럼방지시설,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·관리용 재료적치장(제4호)'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2-09

나) 위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를 종합하면,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'도로의 부속물'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'도로법에 따른 도로'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, '도로의 부속물'에는 해당 시설과 그 부지가 포함되며 또한 해당 시설의 유지·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그 부지도 포함된다(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5두49658 판결, 2013. 4. 25. 선고 2011두17165 판결 등 참조).

2)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건축물 중 제1동은 원고 양산지사 사무실로 사용되는 곳으로 도로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'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'에 해당하고, 이 사건 건축물 중 제2동은 정비고, 창고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도로법 제2조 제2호 바목, 도로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'도로의 유지·관리용 재료적치장'에 해당하며, 이 사건 건축물 중 제3동은 차고지로 사용되는 곳으로, 도로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'주차장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'에 해당하고, 이 사건 건축물 중 제5동은 경비실로 사용되는 곳으로 도로관리시설인 원고 양산지사 사무소의 관리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도로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'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'에 해당하며, 이 사건 건축물 중 제6동은 주유시설로서 도로법 제2조 제2호 바목, 도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'주유소'에 해당하고, 이 사건 건축물 중 제7동은 분뇨처리시설로서 도로관리시설인 양산지사 사무소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도로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'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'에 해당하며, 이 사건 건축물 중 제8동은 월동자재창고, 폐토사 적치장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도로법 제2조 제2호 바목, 도로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'도로의 유지·관리용 재료적치장'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이 사건 건축물은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2-09

3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지방세법은 과세대상 중 토지와 건축물을 달리 규율하고 있고, 과세대상별 비과세대상 재산은 지방세법 제109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'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 토지'가 비과세대상 재산에 해당된다고 하여 '이 사건 건축물'이 당연히 비과세대상 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,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, ① 2019. 12. 31.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'도로: 도로법에 따른 도로(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, 휴게시설, 주유소, 충전소, 교통·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)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.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.'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건축물 중 위 조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나, 위 개정된 시행령은 2020. 1. 1.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법령으로 볼 수는 없는 점, ②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의 개정이유를 살피면 '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의 범위에서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, 휴게시설, 주유소, 충전소, 교통·관광안내소 등을 제외함'으로 기재되어 있는바, 이를 반대해석하면 위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인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건축물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) 소결

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은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2-09

과세되는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**3. 결론**

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2-09

별지 1

## 건축물

| 순번 | 2017년도 7월 일반건축물(2017년도분) 정기과세 내역서 | | | 일반건축물대장 | | | | 현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동명 | 호수 | 면적(㎡) | 구분 | 층별 | 용도 | 면적(㎡) | |
| 1 | 1동 | 101호 | 1,042.64 | 주1 | 1층 | 업무시설 | 1,042.64 | [redacted]지사 사무실 (교통상황실 포함) |
| 2 | 〃 | 201호 | 495.92 | 〃 | 2층 | 업무시설 | 495.92 | 〃 |
| 3 | 〃 | 지하1층 8101호 | 506.83 | 〃 | 지하1층 | 기계실, 지하대피소 | 506.83 | 〃 |
| 4 | 2동 | 101호 | 810.2 | 주2 | 1층 | 창고, 자동차관련 시설 | 810.2 | 정비고 |
| 5 | 〃 | 102호 | 55.58 | 〃 | 〃 | 창고 | 55.58 | 창고 |
| 6 | 〃 | 지하1층 8101호 | 34.2 | 〃 | 지하1층 | 보일러실 | 34.2 | 정비고 |
| 7 | 3동 | 101호 | 575.5 | 주3 | 1층 | 자동차관련 시설 | 575.5 | 차고 |
| 8 | 5동 | 101호 | 39.53 | 주4 | 1층 | 업무시설 | 39.53 | 경비실 |
| 9 | 6동 | 101호 | 10 | 주5 | 1층 | 위험물저장소 | 10 | 주유시설 |
| 10 | 7동 | 101호 | 7.92 | 주6 | 1층 | 분뇨처리시설 | 7.92 | 분뇨처리시설 |
| 11 | 8동 | 101호 | 300 | 주7 | 1층 | 창고시설 | 300 | 월동자재 창고 |
| 12 | 〃 | 102호 | 90 | 주8 | 1층 | 창고시설 | 90 | 폐토사 적치장 |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2-09

별지 2

# 관계 법령

**■ 지방세법**

제109조(비과세)

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(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(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)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·하천·제방·구거·유지 및 묘지

**■ 구 지방세법 시행령(2019. 12. 31.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**

제108조(비과세)

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·하천·제방·구거·유지 및 묘지"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.

1. 도로 :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. 다만,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.

**■ 지방세법 시행령**

제108조(비과세)

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·하천·제방·구거·유지 및 묘지"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.

1. 도로 :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(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, 휴게시설, 주유소, 충전소, 교통·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)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. 다만,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2-09

■ 도로법

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도로"란 차도, 보도(보도), 자전거도로, 측도(측도), 터널, 교량,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,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.
2. "도로의 부속물"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,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.
   가. 주차장, 버스정류시설,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
   나. 시선유도표지, 중앙분리대,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
   다. 통행료 징수시설, 도로관제시설,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
   라.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
   마. 낙석방지시설, 제설시설,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, 도로환경의 개선·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
   바.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■ 구 도로법 시행령(2013. 12. 30.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3조(도로의 부속물)

법 제2조 제2호 바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(이하 "도로관리청"이라 한다)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주유소, 충전소, 교통·관광안내소, 졸음쉼터 및 대기소
2.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
3. 장애물 표적표지,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
4. 방호울타리, 충격흡수시설, 가로등, 교통섬, 도로반사경, 미끄럼방지시설,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·관리용 재료적치장
5.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
6.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, 기상 관측 장치,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·관리를 위한 통신시설
7. 도로 상의 방파시설(방파시설), 방설시설(방설시설), 방풍시설(방풍시설) 또는 방음시설(방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2-09

음림을 포함한다)

8.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)
9. 도로원표(도로원표),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
10. 공동구
11.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(연접)하여 설치한 연구시설.

끝.